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26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백선희·이학영·이소영

윤준병 • 신영대 • 박용갑

위성곤 • 황운하 • 윤종군

권향엽・김 윤・이수진

서왕진 · 한병도 · 박홍근

한창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으로, "장은"을 "장과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아동관련기관 취업자의 심리검사 등) 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채용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항목, 절차, 실시 방법, 시기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 실시) ①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 -----장과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 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9(아동관련기관 취업자 <신 설> 의 심리검사 등) ①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채용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심리검 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 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 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u>수 있다.</u>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심리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 리검사의 항목, 절차, 실시 방 법, 시기·주기 등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